

일본연구센터 동정(2008.9.1~2009.2.28)

I. 학술행사

1. 국제 심포지움

◆ ‘신 한일관계 파트너십 공동선언’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회상, 현안, 그리고 비전

본 일본연구센터에서는 10월 7일, 8일 양일간 ‘신 한일관계 파트너십 공동선언’ 10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학술적으로 재조명하고자 기념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심포지움 첫날인 10월 7일에는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2층 대강의실에서 ‘일본 대중문화개방 10주년과 한일관계 좌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패널 토크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둘째 날인 8일에는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당시 ‘공동선언’을 주도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과 오부치 유코(小淵優子: 오부치 전 수상의 영애, 대독) 저출산대책장관의 강연을 비롯, 각 발표자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중간에 판소리, 해금, 가야금의 문화공연도 행해졌다.

제 1 부

- 일 시 : 10월 7일 (화)
- 장 소 :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2F 대강의실

일본 대중문화개방 10주년과 한일관계 좌담	
사회 : 김영덕(金泳德,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위원)	
오구라 기조(小倉紀藏)	일본 교토대학 교수
채지영(蔡芝榮)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제 2 부

- 일 시 : 10월 8일 (수)
- 장 소 : 서울 프라자 호텔 그랜드볼룸

개회식	개회사	최관(崔官)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소장
	환영사	이기수(李基秀)	고려대학교 총장

	축사	시게이에 도시노리 (重家俊範)	주한일본대사
	축사	최상영(崔相英)	재일본고대교우회장, 영스틸 대표
기념강연	오부치 유코(小淵優子)		저출산대책장관, 전 오부치 수상 영애 한일공동선언·미래지향적 시대의 창조
특별강연	김대중(金大中)		제15대 대통령 한·일, 동북아 그리고 동아시아
한일관계와 동아시아 사회·문화공동체			
	사회 : 라종일(羅鐘一, 우석대학교 총장, 전 주일한국대사)		
	후나바시 요이치 (船橋洋一)	일본 아사히신문 주필	‘교린(交隣)’이라는 것
	강상중(姜尚中)	일본 도쿄대학 교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
	가토 고이치 (加藤紘一)	일본 중의원 의원, 전 자민당 간사장	향후 한일관계에 요구되는 것
문화공연	박현경(朴炫卿, 해금), 연지은(延知恩, 가야금), 남상일(南相一, 판소리)		
한일관계와 동아시아 정치·경제공동체			
	사회 : 염재호(廉載鎬, 고려대학교 교수)		
	최상용(崔相龍)	전 주일한국대사	지금 한일관계를 생각한다
	오코노기 마사오 (小此木政夫)	일본 게이오대학 교수	한일관계 -공동 미래를 위한 전략구축
	정구종(鄭求宗)	한일미래포럼 대표	내셔널리즘을 넘어서 글로벌 공동체로
	종합토론 : 회상, 현안, 그리고 비전		
	사회 : 문정인(文正仁, 연세대학교 교수)		

◆ 국제학술 심포지움 “일본연구의 경계, 그리고 월경(越境)”

12월 12일 고려대학교 BK21 중일언어문화교육단과 본 일본연구센터가 공동 주관하여 국제학술 심포지움 (장소 : 고려대학교 국제관 201호)을 개최하였다. 이는 각기 다른 학문 분야에서 활약하는 연구자들의 다양한 연구성과를 상호소통하기 위해, 열린 일본연구의 방법론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발표자		발표내용
아오야기 에쓰코 (青柳悦子)	쓰쿠바대학 교수	일본어 모노가타리문학의 특징 -근대소설의 「지문」을 둘러싸고-
히라이시 노리코 (平石典子)	쓰쿠바대학 교수	팝컬처의 영역-현대문학·문화와 일본연구-
쓰지나카 유타카 (辻中豊)	쓰쿠바대학 교수	비교속의 일본 -JIGS11개국 조사 속에서의 일본정치와 시민사회-

마쓰이 류고 (松居竜五)	류코쿠대학 교수	동아시아 속의 미나카타 구마구스
이소베 아키라 (磯部彰)	도호쿠대학 교수	「동아시아 출판문화사에서 나아가는 일본연구」의 필요성
리 세이(李征)	푸단대학 교수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근대문학과 번역어의 문제 -일본과 중국의 경우-
정병호(鄭炳浩)	고려대학교 교수	<문학사>의 경계와 월경의 <문학사> -1900년 전후의 <일본문학사>의 편제를 중심으로-
서승원(徐承元)	고려대학교 교수	한중일 내셔널리즘과 링키지 정치의 역설
송완범(宋浣範)	고려대학교 교수	고대 한일의 역사적 쟁점에 대한 시론적 분석 -한반도 남부의 '전방후원분'을 중심으로-

2. 콜로키움

일시	2008년 10월 24일 (제12차)	
발표자	서용달(徐龍達)	모모야마대학 명예교수 (桃山学院大学名誉教授)
제목	재일한국인의 생활과 지방참정권문제 -나의 체험에서의 고찰- 在日韓国人の生活と地方参政権の問題—私の体験から見た考察—	
내용	재일코리안으로서 체험한 차별경험과 일찍이 재일코리안 참정권확보운동에 진력해 온 본인의 경험에 근거하여, 일본사회의 차별철폐를 위한 전략적인 인권옹호운동으로서 지방참정권 운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일본이 역사를 반성하고 다민족 다문화 공생사회, 아시아 시민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인정해야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II. 국내외 교류

본 연구센터는 와세다대학 아시아연구기구(早稲田大学アジア研究機構), 베이징일본연구센터(北京日本学硏究センター), 데즈카야마가쿠인대학 국제이해연구소(帝塚山学院大学国際理解硏究所), 무사시대학(武蔵大学), 타이완대학 일어일본학과(台湾大学日語日文学科), 텐진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天津社会科学院日本硏究所), 국제교양대학(國際教養大学) 등 해외 우수한 일본연구기관과 교류협정(MOU)을 체결하여 연구와 교육 등 각종 학술분야에서 교류를 증진해 왔다.

2008년에는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九州大学韓国硏究センター), 도호쿠대학 동아시아

연구센터(東北大学東アジア研究センター),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高麗大学亜細亞問題研究所), 리쓰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立命館大学コリア-研究センター), 간사이대학 문화교섭학 교육연구거점(関西大学文化交渉学教育研究拠点)등의 국내외협력기관과 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 간사이대학 문화교섭학 교육연구거점(関西大学文化交渉学教育研究拠点)

본 연구센터와 간사이대학 문화교섭학 교육연구거점은 2008년 11월 21일 양 연구센터 간의 협력과 연구의 교류를 위해 교류협정(MOU)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공동연구회나 합동 국제심포지움 개최 등을 통한 연구자 교류와 학술자료 교환 등을 통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Ⅲ. 연구센터 간행물

본 연구센터는 정기간행물인 <일본연구>이외에도 일본연구 수준의 제고를 위한 <일본연구총서>, 심도있는 일본이해를 위해 고전을 번역·출간하는 <일본명작총서>, 글로벌 시대의 일본연구를 선도해갈 <현대일본총서>등 다양한 총서를 기획하여 발간하고 있다. 2005년부터 일본연구총서 6권, 일본명작총서 5권을 고려대학교 출판부에서 간행했으며, 2008년부터 도서출판문에서 간행되고 있으며, 제1차로 향후 100권을 출간할 예정이다.

◆ 일본학 총서

본 연구센터에서는 한국 내 체계적인 일본문화 연구를 진작함과 더불어 일본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일본연구총서」 간행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 시리즈인 ‘일본학 총서’는 일본의 문화, 역사, 문학, 어학, 교육 등에 관한 단행본으로 구성되어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2월에 걸쳐 총 8권의 학술서가 간행되었다.

◆ 일본명작총서

‘일본명작총서’는 한국 내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간행된 적이 없는 모노가타리(物語)·요코쿠(謡曲)·교겐(狂言)·하이쿠(俳句) 등의 일본의 고전시리즈를 번역하여 출판하고자 기획되었다. 대부분의 한국인이 접해본 적이 없는 일본 문화의 원류를 번역, 소개하여 국내의 일본학 연구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한국학 및 서양학연구자, 일본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일본문화에 대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하게 될 것이다. 2007년 2월부터 2008년 10월에 걸쳐 총 11권의 고전 명작이 번역되었다.

◆ 현대일본총서

근년에 새롭게 기획된 현대일본총서는 현대 일본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의 분야를 소개하기 위해 새롭게 기획된 시리즈이다.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그 필요성이 절실한 분야인 현대 일본의 여러 가지 측면에 주목한 의욕적인 기획 시리즈이다. 2008년 2월에 총 2권이 간행되었다.

※ 2008년 9월에서 2009년 2월까지 간행된 연구센터 간행물은 다음과 같다.

일본학총서	일본근대문학의 대표적 작가, 시가 나오야의 문학세계를 작품 속에 드러난 종교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의욕적인 저서이다. 종교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시가 나오야의 여러 작품을 종교와 관련하여 논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는 근대 일본의 대표적 작가의 작품세계가 종교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2008년 9월 간행).
김청균 저 『일본문학과 종교-시가 나오야(志賀直哉)를 중심으로-』	
일본학총서	젠지모노가타리 천년기로 일본 전역이 들썩였던 2008년, 바야흐로 『젠지모노가타리』는 단순한 고전문학 작품이 아니라 거대한 현대의 소비시장 속에서, ‘다루기만 하면 대박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본서는 일본문화 전체를 이끌어가는 신선한 문화 콘텐츠로서의 『젠지모노가타리』의 존재양식에 주목하여 이를 문화론의 관점에서 고찰한 의욕적인 저서이다(2008년 12월 간행).
김수희 저 『젠지 모노가타리 문화론』	
일본명작총서	메이지(明治)시대의 한문학자 이시카와 고사이(石川鴻齋)가 집필한 한문 괴담집의 번역서다. 일본에 전해져 내려오는 괴담과 저자가 창작한 다수의 작품이 담겨있는 본 작품은 일본의 전통적인 괴담과 그 발전 양상을 일괄하는 데에 더 없이 좋은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한일 양국문학에 대한 순수한 관심에서 비롯된 한문학 전공자와 일문학 전공자의 공동번역 작업으로서의 의의도 지닌다(2008년 10월 간행).
김정숙/고영란 역 『야창괴담』	
일본명작총서	일본 최초의 단편 모노가타리 모음집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온 『쓰쓰미추나곤 모노가타리』가 일본고전문학연구에 종사해온 연구자들에 의해 빛을 발하게 되었다. 다수의 작가에 의해 창작되었을 거라 추정되는 10편의 단편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을 네 명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번역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10월 간행).
유인숙 외 3인 역 『쓰쓰미추나곤 모노가타리』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규약

1999. 8. 13 제정

2001. 9. 26 개정

2004. 7. 23 개정

2007. 1. 23 개정

2007. 11. 1 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및 소재지) 본 연구센터는 고려대학교 부설 일본연구센터(영문명 : Research Center of Japanese Studies, 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라 칭하고,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내에 둔다.

제 2 조 (목적) 본 연구센터는 주체적이고 보편성있는 연구방법론으로 일본에 관한 제분야를 연구하여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고 인류문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 연구센터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일본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과제 위탁과 지원
2. 국내외 학문교류와 그 지원
3. 학술 발표회 및 공개강좌 개최
4. 전문 학술지와 연구 총서 간행
5. 일본 및 동아시아 관련 문화 콘텐츠 개발
6. 지역전문가 및 인적 자원의 육성
7. 일본연구를 위한 자료조사 및 정보 축적
8. 기타 본 연구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 4 조 (기구) 본 연구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둔다.

1. 위원회
 - 가. 운영 위원회
 - 나. 연구기획 위원회
 - 다. 편집 위원회
 - 라. 학술·출판 위원회
 - 마. 자문 위원회
 - 바. 특별 위원회
2. 학술토대·실천기구
 - 가. 일본 정보자료원
 - 나. 일본 번역원
 - 다. 한일교류·교육원
3. 연구실
 - 가. 일본 문학·문화연구실
 - 나. 일본 어학·교육연구실
 - 다. 일본 역사연구실
 - 라. 일본 사상·종교연구실
 - 마. 일본 정치·경제연구실
 - 바. 재일코리안·재한일본인연구실
4. 행정기구
 - 가. 총무·기획부
 - 나. 교육·출판부
5. 청산광유지 장학회

제 5 조 (분장업무) 각 연구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일본 문학·문화연구실은 일본의 문학과 제반 문화현상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2. 일본 어학·교육연구실은 일본의 언어와 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3. 일본 역사연구실은 일본의 역사와 사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4. 일본 사상·종교연구실은 일본의 사상과 종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5. 일본 정치·경제연구실은 일본의 정치와 경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6. 재일코리안·재한일본인연구실은 일본 재일코리안(재일동포, 일본거주 재외국민 포함)과 재한일본인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제 6 조 (임원) 본 연구센터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학술토대·실천기구 원장 3명
3. 연구실장 6명

4. 총무 1명

5. 감사 1명

제 7 조 (소장)

- ① 소장은 본교 문과대학 전임 교원 중에서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소장은 인문한국(HK)지원사업 기간 동안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임기를 10년으로 한다.
- ② 소장은 본 연구센터를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제 8 조 (학술토대·실천기구 원장, 연구실장, 총무)

- ① 일본 정보자료원장은 일본 정보자료원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② 일본 번역원장은 일본 번역원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③ 한일교류·교육원장은 한일교류·교육원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④ 연구실장은 해당 연구실의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 ⑤ 총무는 회계업무를 포함한 연구소의 제반 행정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 ⑥ 학술토대·실천기구 원장, 연구실장, 총무는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 (청산과유지 장학회)

- ① 본 연구센터에 청산과유지 장학금 지급을 위한 청산과유지 장학회를 설치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 ② 청산과유지 장학금 지급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본교 대외협력처 및 학생처와 긴밀히 협조한다.

제 10조 (감사)

- ① 감사는 본 연구센터의 회계와 결산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 ② 감사는 회계연도의 종료 후에 회계와 정산 내역을 소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1조 (연구교수 및 연구원) 본 연구센터에는 연구업무를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 1. 연구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본 연구센터에서 외부 학술과제를 수행

하는 연구자 및 대학의 연구교원 위촉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자로서 연구실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절차는 고려대학교 연구교원 임용규정에 의거한다.

2. 선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특정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실장이 제청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3.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특정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실장이 제청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4. 객원연구원은 본 대학 또는 타 대학 및 외국대학의 전임교원이나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본 연구센터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실장이 제청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5. 연구보조원은 연구의 필요에 따라 학부생, 석사 학위 과정 학생들을 해당 연구실장이 제청하여 소장이 위촉한다.
6.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7. HK연구교수/원의 임용은 별도의 학교 규정에 따른다.

제 12조 (간사)

- ① 소장은 본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간사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는 총무의 제청으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장 위원회

제 13조 (운영위원회)

- ① 운영 위원회는 소장, 외부 자문위원, 3원6실의 원장 및 실장, 총무 중에서 8명 내외로 구성되고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② 운영위원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 ③ 회의는 3월 초에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소장의 요청에 의해 소집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④ 운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 2. 연구센터의 예산 및 결산
 - 3. 연구센터의 제규정의 제정 및 철폐
 - 4. 연구센터의 인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
 - 5. HK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 6. 기타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 14조 (연구기획위원회)

- ① 연구기획위원회는 소장, 3원6실의 원장 및 실장, 총무 중에서 연구·기획 과제와 관련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② 연구기획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 ③ 연구기획위원회는 3원6실의 연구 및 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3원 6실간의 업무를 조정한다.

제 15조 (편집위원회)

- ① 편집 위원회는 연구센터의 기관지인 『일본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해외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하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학술연구업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소장이 위촉하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6조 (학술·출판위원회)

- ① 학술·출판위원회는 소장, 3원6실의 원장 및 실장으로 구성되고, 소장이 위원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관장한다.
- ② 학술·출판 위원회는 연구센터의 모든 학술행사에 관한 사항과 간행물에 관한 편집·출판 업무를 협의하고 관리한다.

제 17조 (자문위원회)

- ① 자문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 명예교수, 본 연구센터 관련 연구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② 자문위원회는 본 연구센터의 전반적인 연구방향과 섭외업무에 관해 자문한다.

제 18조 (특별위원회)

- ① 특별 위원회는 특별한 프로젝트나 각 연구실 단위를 넘는 학술활동을 행할 필요성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성립된다.
- ② 특별위원회는 소장, 관련 연구실장 및 특별 위원회 활동에 가장 적절한 연구원으로 구성된다.

제4장 재 정

제 19조 (경비) 본 연구센터의 경비는 기금, 사업보조금, 연구개발비, 학술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0조 (회계연도) 본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21조 (예산과 결산) 소장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해 예산서와 사업 계획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서 사업 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조 (회계 감사)

- ① 이 연구원의 수입과 지출은 연 1회 이상 본교 기획예산처장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소장은 필요에 따라 산하 연구소의 운영과 회계 상황을 확인하고 감독한다.

제 23조 (재산의 귀속) 본 연구센터가 해산될 경우에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

제5장 규약개정 및 준용

제 24조 (규약개정 등) 본 연구센터의 규약개정, 해산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5조 (운영세칙) 본 연구센터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 26조 (준용) 기타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부설 연구기관 설치운영 규정 및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약은 1999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약은 2001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약은 200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약은 200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약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日本研究』投稿規定

가. 투고요령

1. 내용 : 일본문학, 문화, 어학, 교육, 역사, 사상, 종교, 정치, 경제, 재일코리안, 재한 일본인 등 일본에 관련된 독창적인 내용으로 기존의 국내외 학술지 및 단행본에 게재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출 : 원고투고는 <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 e-mail로 제출한다.
3. 투고원고 제출처 :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주소 : 서울 성북구 안암동 5-1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e-mail : kujc@korea.ac.kr
전화번호 : 02) 3290-2592(일본연구센터)
4. 투고마감일 : 논문의 접수는 수시로 하되 마감일은 다음과 같다.
상반기 6월 30일, 하반기 12월 31일
5. 게재 및 수정 : 원고의 게재여부는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수정에 관한 사항은 심사규정에 상술.)
6. 교정 : 게재가로 결정된 원고의 교정은 필자의 책임 하에 행한다.
7. 별쇄본 : 게재가 결정된 필자에게는 본 연구지 1부를 증정한다.(별쇄본은 필자의 신청을 받아 제작하며 비용은 필자가 부담한다.)
8. 심사료 및 게재료 :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에 심사료를, 게재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 게재료를 일본연구센터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단 해외투고자의 경우, 편집회의를 거쳐 심사료, 게재료를 본 연구센터가 지원할 수 있다.)
9. 저작권 :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게재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본 연구센터가 소유한다.
10. 지적재산사용동의권: <저작권산권 양도 확인서>를 제출, 지적재산 사용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논문을 게재한다.
11. 사이버 출판 : 게재된 모든 논문은 일본연구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이버 출판한다.

나. 투고논문 작성요령

1. 편집용지 : <B5용지> 위 15, 머리말13, 왼쪽17, 오른쪽15, 아래20, 꼬리말0, 제본7.
2. 원고분량 : 작성요령에 준하여 편집한 상태로 요지, 참고문헌 등을 포함해 16~19매로 한다. 20매 이상일 경우 초과분에 대한 인쇄료는 필자가 부담한다.
3. 사용언어 : 한국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원고작성 : 논문제목 - 신명조 15, 진하게, 가운데 정렬.
 필자명 - 신명조 11, 줄간격 140, 오른쪽 정렬.
 e-mail address - 신명조 8, 줄간격 100.
 요지 - 신명조 또는 신명조약자 8, 줄간격 140.
 (요지는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하며, 분량은 논문 1면의 1/2쪽 이내로 한다)
 주제어 - 신명조 8, 진하게.
 (논문과 동일한 언어로 4~6단어를 제시한다.)
 큰제목 - 신명조 12, 진하게, 줄간격 170.
 본문 - 신명조 10, 줄간격 170.
 인용문 - 신명조 9, 줄간격 170, 문단모양: 왼쪽6ch, 들여쓰기 안함.
 각주 - 신명조 9, 줄간격 140, 정렬방식: 양쪽 혼합.
 (각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용 또는 참고한 쪽수를 명기한다.)
 참고문헌 - 신명조 8, 줄간격 140.

기타 참고문헌 작성요령 및 간격의 설정 등 자세한 사항은 <『日本研究』論文作成要領>을 참고한다.

『日本研究』論文作成要領

<논문제목> **일본어 교육의 방향**(신명조 15, 진하게, 가운데정렬.)

****2줄****

<필자명> 김철수(신명조 11, 줄간격 140.)

<e-mail address> abc@mail.com (신명조 8, 줄간격 100.)

<요지> 작성언어: 영어(권장) 또는 일본어.

분량: 논문 1면의 1/2쪽 이내.

글자크기: 신명조 또는 신명조약자 8, 줄간격 140.

<주제어>: 주제어는 논문과 동일한 언어로 4~6단어를 제시한다.(신명조8, 진하게.)

****2줄****

<큰제목> **1. 연구목적 및 방법**(신명조 12, 진하게, 줄간격 170.)

****1줄****

<본문> 이 논문은.....(신명조 10, 줄간격 170.)

****1줄****

2. 한국의 일본어 교육의 실태

****1줄**** (작은 제목과 본문 사이는 떼지 않음.)

<인용문> 원문의 인용은 행을 새로 하여 상하를 한 칸 띄운 뒤 ‘문단설정’을 한다.

(글자모양: 신명조 9, 줄간격 170, 문단모양: 왼쪽6ch, 들여쓰기 안함.)

<각주> 신명조 9, 줄간격 140, 정렬방식: 양쪽 혼합.

* 각주의 인용 및 참고자료에 대해서는 발행년도와 쪽수 등을 명기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제목은 신명조 12, 진하게, 줄간격 140.

참고문헌 내용은 신명조8, 줄간격 140.

* 필자명을 기준으로 국문, 일문, 영문 순으로 각각 가나다, 오십음, 알파벳 순으로 기재한다.

* 필자명(연도), 논문 또는 단행본명, 게재권 호, 발행처, 쪽수의 순서로 기재한다.

『日本研究』 審査規定

제1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해 논문과 관련된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제2조 (투고 논문)

투고논문에 대해 심사위원이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로 판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 (논문의 내용)

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문화, 일본어교육 등 일본학 관련 분야의 독창적인 내용으로 기존의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제4조 (논문의 체제)

투고 규정에 제시한 "투고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제5조 (논문 심사)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후 10일 이내에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의 판정소견을 소정 양식에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논문심사서와 원고를 편집위원회에 E-mail로 송부한다.

제6조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한다.
2.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에 대한 권고사항을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 수정이 성실히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논문 게재를 결정한다.
3.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그 논문의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4. 심사위원간의 '계재'와 '수정 후 계재'로 판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정 후 계재'로 판정하고 위의 2의 사항을 따른다.
5. '계재 불가'가 2인 이상일 경우 '계재 불가'로 판정한다.
6. 심사 위원간의 의견이 모두 다를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日本研究』 研究倫理規定

제1장 목적

본 규정은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의 학술지인 『일본연구』의 발간에 있어서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자 간의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연구환경의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연구자

- (1) 연구자는 독창적인 연구물을 작성하며 자신의 연구행위 및 연구결과 내용에 책임을 진다.
- (2) 연구자는 각자 연구물에 있어 표절, 위조, 변조, 중복게재 및 이중출판을 하지 않는다.
- (3) 연구자는 공개된 학술자료 및 논문을 인용, 참조할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명기해야 한다.
- (4) 연구결과물에 기재된 공동저자의 경우, 해당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의 경우에 한하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지 않는다.
- (5)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저자는 윤리위원회의 심사 및 결과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3장 심사위원

-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한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논문에 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출판 전까지 논문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 (3) 심사위원은 본인이 논문심사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혹은,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의심될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본 연구센터의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4)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이 본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이를 편집

위원회에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제4장 편집위원

- (1)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투고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논문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논문에 관한 내용 및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4) 편집위원은 투고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문제제기 및 제보가 발생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이를 통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장 윤리위원회

(1) 구성

-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본 연구센터 운영위원 및 본 학술지 편집위원 중 5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2) 목적

-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사항을 심의하고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운영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3) 운영

-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한다. 단, 해당 위반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연구센터의 최종적인 징계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 심의결과에 대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징계

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될 경우, 피제소자의 무혐의를 통보하며 후속조치를 취한다. 연구윤리규정 위반사실이 확정될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와 징계를 할 수 있다.

- 본 학술지에서 논문목록 삭제
- 해당 연구결과의 수정 및 무효화
-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3년 이상)
- 공식적 연구관리 기관 및 소속기관에 통보

제6장 부칙

- 본 연구윤리 규정은 200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